

결 정

2018 - 1015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용
2.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
3.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
4.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

주 문

한국경제 2017년 12월 7일자 B6~B7면 「유망 분양현장」 기사 16건, 12월 20일자 C7면 「대웅제약 우루사」 등 기사 4건, 朝鮮日報 12월 18일자 D7면 「연말, 과음에 고통받는 肝...UDCA 간기능 개선제로 간세포 보호/대웅제약 우루사」 제목의 기사, 서울경제 12월 26일자 21면 「“건강하게 맛있네”...유산균 담은 피자, 女心 잡다」 제목의 기사, 東亞日報 12월 27일자 C3면 「전통의 제과 제빵 명가... 60년 노하우로 가정간편식 시장공략/서울식품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한국경제, 朝鮮日報, 서울경제, 東亞日報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의약품, 피자, 피자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.

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기.1.8.2018

위	원	정	송	호	정우
		장	명	국	김명국
		이	동	현	이동현
		장	인	철	장인철
		강		희	강희
		김	영	모	김영모
		박	현	갑	박현갑
		박	미	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